

- 법적근거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 제3조, 제22조
-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
  - ※ 임차인 포함(임대인 동의 必)
  - ※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되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·LH 동의 必,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
- 선정기준 : 시·군별 배정량,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
  - ※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%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
- 사업제외대상
  -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,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,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3년 이내 수혜자
- 사업량 : 120호
- 사업비 : 600백만원(도비(주거복지기금) 100%)
- 사업내용 :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
  - (지원항목) 출입문, 바닥, 비상연락장치, 욕실,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(도배, 장판, 간단수리, 청소, 단열 등)
  - (예외허용) 옥외 화장실, 출입구(경사로, 손잡이 등)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
    - ※ 지붕·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
- 추진일정
  - 사업 추진계획 수립 : 2022. 12월(道)
  -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: 2023. 1월 ~ 3월(시·군 등 → 道)
  -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: 2023. 4월 ~ 6월(GH)
  - 공사시행 : 2023. 6월 ~ 12월(GH)
  - 사업결과보고 : 2024. 1월(GH → 道)